

울산지방법원 2024. 4. 18 선고 2023나16427 판결 [건물명도 등]

## 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4. 4. 18 선고 2023나16427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3. 10. 18 선고 2022가단8237 판결

## 전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3. 14.

판결선고 2024. 4. 18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2가단8237 판결

## 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인도하고, 2022. 8. 24.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같은바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2면 11행의 ‘1,000,000원’을 ‘850,000원’으로 고치고, 3면 3행의 ‘피고에게’를 ‘원고에게’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박성규, 판사 설정은, 판사 유진현

별지